윤리강령

어프로티움 주식회사

제 1절 고객에 대한 자세

제 4 조 : 고객의견 존중과 신뢰형성

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, 고객의 정당한 요구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.

②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 고객에게 신뢰를 받도록 한다.

③ 고객의 불만사항이나 제안사항 등을 접수하는 채널을 개발, 유지하여 고객의 의견 신속·정확하게 처리한다.

제 5 조 : 고객만족 및 봉사

① 고객은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명심하여,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.

② 높은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③ 고객의 만족과 안전을 위하여 제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.

제 6 조 : 고객에 대한 자세

① 적극적으로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고, 겸손하며 친절한 태도로 성의 있게 응대한다.

② 회사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밝은 표정과 올바른 예절로 대한다.

③ 고객이 있는 곳에서 잡담을 하거나 회사의 기밀이나 임직원의 결점을 말하지 않는다.

제 2절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자세

제 7 조 :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 보호

① 주주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경제성이 있는 보답을 위하여 전문적인 책임경영을 한다.

② 주주와 투자자의 자산을 보전, 보호, 증가시키며,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으로 경영한다.

③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, 제안, 불편 및 공식적 결정에 대하여 존중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한다.

제 8 조 : 투명한 경영

① 기업경영에 관한 법령과 원칙을 준수하고,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록, 관리하여 투명경영 체계를 확립한다.

② 주주와 투자자에 대하여 법이나 경쟁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.

제 3절 회사와 임직원의 자세

제 3절-1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

제 9 조 : 임직원 존중

①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고, 문화환경 조성, 복지후생시설 확충 등 임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한다.

② 회사는 경영활동 및 목적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장려하여 임직원들의 업무 및 회사 전반의 업무개선에 참여하도록 한다.

제 10 조 : 공정한 대우

① 회사는 교육,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, 성별·학력·연령·종교·출신·지역·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
② 업무 수행 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,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수에 대하여서는 최대한 배려한다.

제 11 조 : 안전관리

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임직원들이 개인적인 위험에

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
제 12 조 : 자기계발 지원

①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여건을 조성한다.

② 모든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연마하고 계발하여 경력을 쌓아 가도록 최대한 장려하고 지원한다.

제 13 조 : 노사간 상호 신뢰와 화합

① 노사 상호간 법규를 준수하고,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생산적 노사 관계를 마련한다.

② 회사는 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여 조직 내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 3절-2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

제 14 조 : 핵심가치 경영이념과 경영방침의 공감

① 임직원은 회사의 핵심가치와 경영방침을 공감하고 이를 업무 수행 시 최우선의 가치와 원칙으로 삼는다.

② 임직원은 업무상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 행동이 회사의 신뢰에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15 조 : 사명감 및 솔선수범

① 임직원은 회사의 공동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개인과 소속 부서 및 각 사업부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적극 협력한다.

② 임직원은 제반 법령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며, 회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
③ 임직원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고 기업경영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모범을 보인다.

제 16 조 : 이해충돌회피

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: 부당이득 수수 금지

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

는 금품,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.

제 18 조 : 공·사 구분 등

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·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.

②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,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,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, 도박, 음란사이트 접속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임직원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제 19 조 : 정보의 기밀유지와 안전사고 예방

①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 관련 정보는 기밀로 철저히 관리하며 회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② 임직원은 안전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.

제 20 조 : 정치참여 금지

① 임직원은 정치에 참여함에 있어서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행동한다.

②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 시간 중에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,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.

제 3절-3 임직원 상호간의 책임과 책무

제 21 조 : 상호간 직장예절

① 임직원 상호간에 신뢰와 성실로 대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공동체 의식과 따뜻한 동료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한다.

② 임직원들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의 기본예의를 지키고, 자기 자신은 물론 임직원 상호간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인다.

제 22 조 : 상호간 금품 등 수수 및 금전 거래 금지

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직원 사이의 금품, 향응제공, 편의의 수수와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.

제 23 조 : 성희롱 금지

① 임직원 상호간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육체적·언어적·시각적 언행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 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.

②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, 회사는 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가해자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4절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

제 24 조 : 평등한 기회 부여

① 회사는 협력회사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한다.

②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.

③ 임직원은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협력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오해 받을 행위는 삼가 한다.

제 25 조 : 공정한 거래

①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거래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게 부당한 요구 등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.

② 협력회사와 정당한 상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공정하게 거래하여 상호간 이익이 되도록 한다.

③ 모든 거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, 실제 거래 행위는 계약과 일치

하여야 한다. 만일 계약과 다르게 실제 거래행위가 발생될 경우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거래 당사자간 합의하에 진행하여야 한다.

제 26 조 : 윤리경영에 대한 전파 및 홍보

회사의 윤리경영을 협력회사에 전파·홍보하여 협력회사가 회사의 윤리경영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.

제 5절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한 자세

제 27 조 : 사회적 책임

① 정당한 이익 창출을 통해 영속 기업으로 유지·발전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발전에 공헌한다.

② 제반 법규 및 사업 영위 지역의 법규, 조례, 관습, 문화,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건전한 문화형성에 기여한다.

제 28 조 : 사회공헌활동

① 기업이윤을 지속적으로 사회에 환원하여 문화적·사회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.

② 사회봉사, 재난구호 등 사회공헌 활동 및 봉사 활동을 지원하며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.

제 29 조 : 환경 보전

① 사업에 수반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사전적·사후적 대책을 강구하고 환경오염의 방지와 자연보호에 최선을 다한다.

②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법령과 회사의 제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환경 친화적 기업을 지향한다

제 30 조 : 조세의무

① 회사는 고의로 조세 의무를 회피하지 않으며 회사의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유지·보관한다.

② 회사는 임직원들의 수입과 관련하여 과세 가능한 모든 항목을 나열하고 과세용으로 신고한다.

제 31 조 : 법규 준수

① 국민 경제를 해치거나 국민 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는 하지 않는다.

② 국제협약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기타 법규등 국내외의 부패방지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한다.